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 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등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정을 재검토하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8개 시행규칙에서 규제의 재검토가 불필요한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사용을 추가하는 등 3개 시행규칙에서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의 일몰 규제심사를 마침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 신설 등 없음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2조(「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3조(「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도선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5조(「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제6조(「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7조(「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2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0 제1호나목1)가) 및 나)를 각각 나) 및 다)로 하고, 같은 1)에 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제조경력 또는 승선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제8조(「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9조(「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선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제11조(「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1호나목2)나) 중 “기술사 또는 기사자격증”을 “산업기사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2) 다) 전단 중 “5년”을 “2년”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13조(「수산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5조(「항만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의 개정)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18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해운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44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방식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u>	<u><삭 제></u>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1. 제2조에 따른 선령기준 적용 제외: 2017년 1월 1일</u> <u>2.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신청 등: 2017년 1월 1일</u>	<u><삭 제></u>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	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제25조(규제의 재검토) -----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	-----		
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	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	-----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	다.	-----		
1. 제5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 2		-----		
<u>022년 2월 18일</u>		--.		
2. 제5조의3에 따른 정당한 사		<삭 제>		
<u>유가 있는 경우: 2022년 2월 1</u>				
<u>8일</u>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u> <u>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u> <u>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u> <u>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u> <u>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u> <u>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u> <u>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u> <u>한다.</u> <u>1. 삭제</u> <u>2. 제7조에 따른 실무수습: 2017</u> <u>년 1월 1일</u> <u>3. 삭제</u> <u>4. 제18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u> <u>른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u> <u>도선구: 2017년 1월 1일</u> <u>5. 삭제</u> <u>6. 삭제</u>	<u><삭 제></u>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제7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 ----- ----- -----.
1. 다음 각 목의 어구를 사용하는 방법 가. ~ 마. (생략)	1. ----- ----- 가. ~ 마. (현행과 같음)
<u><신설></u>	<u>바.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u>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u> <u>1. 삭제</u> <u>2.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허가어업의 종류 및 규모 등: 2017년 1월 1일</u> <u>3. 삭제</u> <u>4. 삭제</u> <u>5. 삭제</u> <u>6. 삭제</u> <u>7. 삭제</u> <u>8. 제22조 및 별표 4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7년 1월 1일</u> <u>9. 삭제</u>	<u><삭 제></u>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 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 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1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54조에 따른 예비검사: 201 7년 1월 1일	<삭제>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제81조에 따른 예인선항해검 사: 2017년 1월 1일	<삭제>
5. 삭제	
6. 제97조의2에 따른 선박검사 원의 자격: 2017년 1월 1일	<삭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자동화 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u>	<u><삭 제></u>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u> <u>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u> <u>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u> <u>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u> <u>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u> <u>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u> <u>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u> <u>한다.</u> <u>1. 삭제</u> <u>2. 제4조에 따른 결산서류의 작</u> <u>성기준 및 기재사항: 2017년 1</u> <u>월 1일</u> <u>3. 제5조에 따른 감사보고서의</u> <u>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u>	<u><삭 제></u>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6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u> <u>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u> <u>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u> <u>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u> <u>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u> <u>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u> <u>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u> <u>다.</u> <u>1. 삭제</u> <u>2. 삭제</u> <u>3. 삭제</u> <u>4. 삭제</u> <u>5. 삭제</u> <u>6. 삭제</u> <u>7. 삭제</u> <u>8. 삭제</u> <u>9. 삭제</u> <u>10. 삭제</u> <u>11. 제45조에 따른 선원의 자격</u> <u>요건 등에 대한 특례: 2017년</u> <u>1월 1일</u> <u>12. 제46조의5에 따른 어선원의</u>	<u><삭 제></u>

<u>유급휴가 일수: 2017년 1월 1</u> <u>일</u> <u>13. 삭제</u> <u>14. 삭제</u>	
--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 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 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삭제	
4. 제10조에 따른 변경허가: 201 <u>7년 1월 1일</u>	<삭제>
5. · 6. 삭제	
7. ~ 11. (생략)	7. ~ 11. (현행과 같음)

수산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4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u> <u>부장관은 제37조의7제2항에 따</u> <u>른 처방전 발급수수료에 대하여</u> <u>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u> <u>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u> <u>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u> <u>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u> <u>의 조치를 해야 한다.</u>	<u><삭 제></u>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93조(규제의 재검토) ----- ----- ----- ----- ----- -----.
1. 제11조 및 별표 3에 따른 <u>마늘어업 어장에서의 포획·채취방법</u>	<u><삭 제></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제23조 및 별표 5에 따른 <u>정지망어업 및 마을어업 보호구역의 범위</u>	<u><삭 제></u>
4. 제41조 및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의 <u>규정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등</u>	<u><삭 제></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제56조에 따른 어업의 <u>변경허가</u>	<u><삭 제></u>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 부 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권리· 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에 대해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 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 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제43조에 따른 권리 · 의무의</u> <u>이전 인가 신청: 2020년 1월 1</u> <u>일</u>	<u><삭 제></u>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검사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u>	<u><삭 제></u>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u> <u>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운임</u> <u>및 요금에 대하여 2017년 1월 1</u> <u>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u> <u>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u> <u>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u> <u>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u> <u>야 한다.</u>	<u><삭 제></u>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 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 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 다.	제86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해양 시설: 2017년 1월 1일	<삭 제>
2. 제7조에 따른 정도관리: 2017 년 1월 1일	<삭 제>
3. ~ 15. (생략)	3. ~ 15.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 25 –